의안번호	2201109
의 뢰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4. 7. 11.
추계번호	24B1413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온라인 도매판매자·도매구매자 인가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억 4,200만원, 2029년 33억 8,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34억원(연평균 26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안 제8조),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안제9조), 검사(안제23조)	농림축산식품부	—	2,159	2,048	2,088	2,130	8,425	1,685
	해양수산부	—	1,284	1,207	1,230	1,255	4,975	995
추가재정소요		—	3,442	3,254	3,319	3,385	13,400	2,680

주: 신규인력은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구축 완료(2025년 3차년도) 후 2026년부터 필요한 것으로 가정 (농림축산식품부 30명, 해양수산부 20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이라 함)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이하 “온라인거래플랫폼”이라 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의무규정
		온라인거래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2항) 1.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시스템 2. 온라인도매시장 내 상품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3. 대금정산 및 여신관리 시스템 4. 배송정보 연계 시스템 5. 고객지원 시스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4	안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이하 "온라인도매판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부류(部類)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받아야 함.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이하 "온라인도매구매자"라 한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온라인도매구매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21조(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23조(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th></tr>
<tr><td>1</td><td>안 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등)</td><td rowspan="3">—</td><td rowspan="3">• 미대상:
– 제정안은 2023년 11월 출범·운영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및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2022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농산물온라인거래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중이며, 이에 따라 연차별 온라인도매시장 구축 및 운영 예산 편성·집행중
※ 상세내역은 [참고자료]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ISP 결과('22년) 참고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033-360)</td><td>600</td><td>1,200</td><td>4,862</td><td>10,434</td></tr><tr><td>– 시범사업, 기본계획</td><td>600</td><td>1,200</td><td>—</td><td>—</td></tr><tr><td>– 통합플랫폼구축</td><td>—</td><td>—</td><td>4,622</td><td>9,256</td></tr><tr><td>–온라인도매시장 운영지원</td><td>—</td><td>—</td><td>240</td><td>1,178</td></tr></table>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td></tr>
<tr><td>2</td><td>안 제5조(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td></tr>
<tr><td>3</td><td>안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td></tr>
<tr><td>4, 5, 7</td><td>안 제8조(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안 제9조(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안 제23조(검사)</td><td>○</td><td>•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td></tr>
<tr><td>6</td><td>안 제21조(교육훈련)</td><td>—</td><td>• 미대상
– 교육훈련 비용은 현행 사업 예산에서 충당가능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교육훈련사업 및 수산물 유통종사자 교육에 따른 교육일정 중 온라인도매 내용을 추가하여 별도의 사업비 없이 교육수행 가능</td></tr>
</table>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요율 및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1)]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2023년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및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공식 출범시킴[2)]

○ 2024년 5월 24일,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은 수산물 거래 및 유통 기능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됨[3)]

-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양곡류·청과류 및 수산물 등을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장
-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가 농산물 거래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수단 및 시스템
- 운영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024.4.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13.004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027년까지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 만든다" 2023. 11. 30.

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5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2024.5.13.

○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은 B2B거래플랫폼, 거래소운영관리시스템, 정산시스템, 물류정보연계시스템 등 통합시스템으로 구축('23~25년)

- 5년간('23~'27) 총 사업비용은 253.3억원, 시스템은 3년('23~'25)간 구축중이며, 2024년 현재 2차년도 시스템 구축중

  ※ 상세 내역은 [참고자료]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ISP 결과('22년) 참고

[그림 1]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및 온라인거래플랫폼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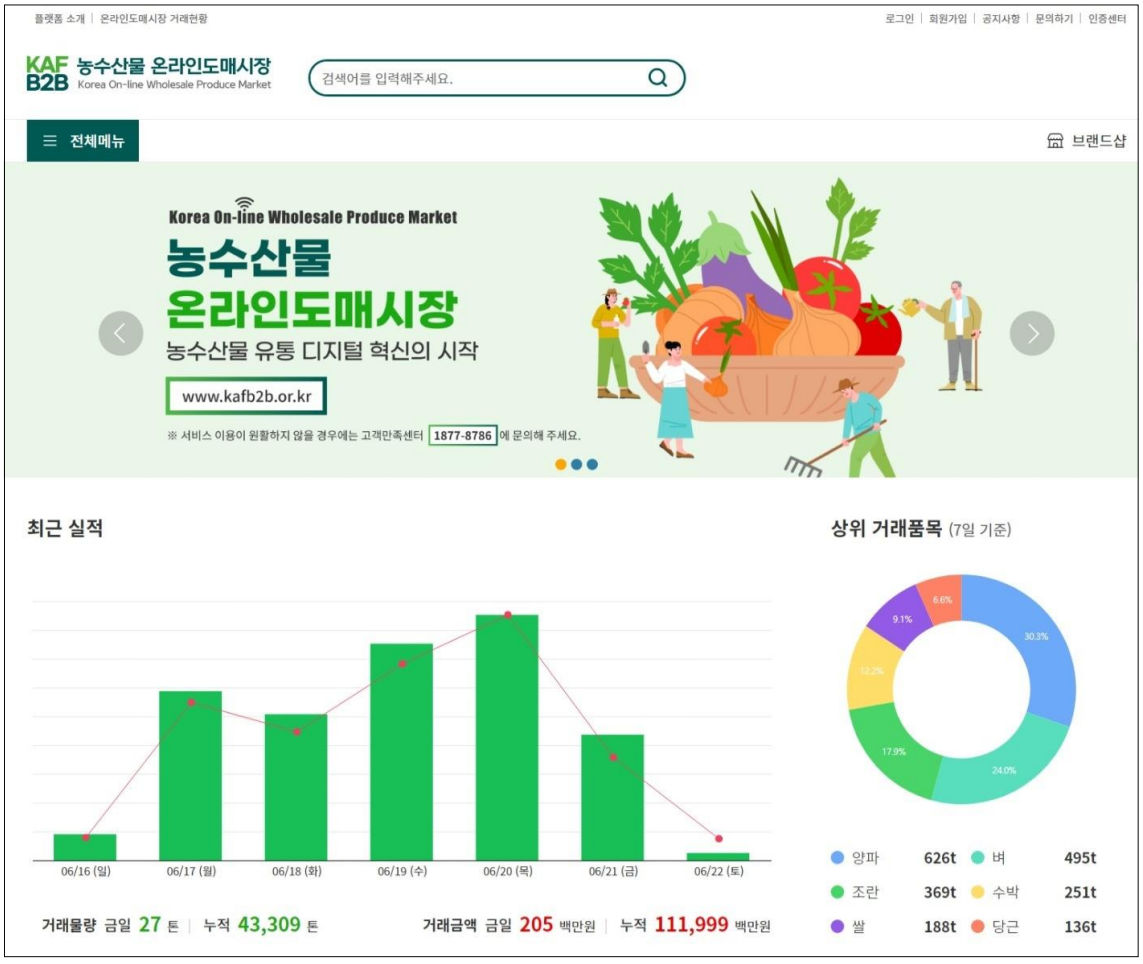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및 온라인거래플랫폼 홈페이지
<https://kafb2b.or.kr/client/mn/main/main.do>

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안 제8조),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안 제9조), 검사(안 제23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온라인도매판매자를 인가하고(안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며(안 제9조),[4]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 등을 검사(안 제23조)하는 경우, 신규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련 법인 및 도매인, 출하자 등[5]이 온라인 시장으로 편입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인가 및 검사 업무로 인한 신규인력이 필요함

○ 신규 인력은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구축 완료(2025년 3차년도) 후 2026년부터 필요한 것으로 가정

- 이때, 신규인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9개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14개 지원)에 일정 인원을 배치하여 추가적인 사무실 임차료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필요인원 및 인건비)** 동 인가 및 검사에 필요한 인원은 총 50명(농림축산식품부 30명, 해양수산부 20명[6])으로 직급별 인원 수 및 1인당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가정

- 1인당 인건비는 2024년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직급별 인건비 편성내역으로 산출
-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4) 안 제9조에 따라 온라인도매구매자에 대한 인가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만 부여됨

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인가 및 검사 대상 규모는 2021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청과류) 토계 기준으로 도매시장 32개소, 법인 82개소, 중도매인 6,083명, 시장도매인 60개소, 매매참가인 518명 등임. 이 외에 공판장(농협) 79개소(산지공판장 46개소 등) 및 관련 중도매인 3,056명 등이 있음

6)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인가 및 검사 업무 수행에 각각 6급 30명(농식품부) 및 6급 20명(해수부)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2] 필요인원 수 및 인건비 단가: 2024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명, 백만원)

		6급	7급	8급	9급	합계
농림축산식품부	직급별 인원(A)	6	9	9	6	30
	직급별 인건비 단가	77	63	45	39	—
	소계(C=A×B)	460	565	409	237	1,670
해양수산부	직급별 인원(D)	4	6	6	4	20
	직급별 인건비 단가(E)	64	47	41	36	—
	소계(F=D×E)	256	281	248	146	932
합계(G=C+F)		716	846	657	383	2,602

주: 1인당 인건비는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직급별 봉급,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것임(기술정보수당 등 일부 수당 미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

○ **(기본경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적용(2024년 기준)

[표 3]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인건비(A)	기본경비(B)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C=B/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0,532	2,600	2.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940	1,631[1)]	9.1%

주: 1) 총액 및 비총액 기본경비 합산금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1.

○ **(자산취득비)** 신규 인력이 충원되는 2026년에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502만원(2026년 기준)[7)]

7) 2020년 기준 자산취득비(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기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온라인 도매판매자·도매구매자 인가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34억원으로 추계됨

[표 4] 온라인 도매판매자·도매구매자 인가 및 검사 업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농림축산식품부	인건비	—	1,734	1,767	1,801	1,835	7,137
	기관부담금	—	229	235	241	248	953
	기본경비	—	45	46	47	47	185
	자산취득비	—	151	—	—	—	151
	소계(A)	—	2,159	2,048	2,088	2,130	8,425
해양수산부	인건비	—	967	986	1,004	1,024	3,981
	기관부담금	—	128	131	135	138	532
	기본경비	—	88	90	91	93	362
	자산취득비	—	100	—	—	—	100
	소계(B)	—	1,284	1,207	1,230	1,255	4,975
추가재정소요(C=A+B)		—	3,442	3,254	3,319	3,385	13,400

주: 신규인력은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구축 완료(2025년 3차년도) 후 2026년부터 필요한 것으로 가정 (농림축산식품부 30명, 해양수산부 20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제정안에 따른 필요인원 수를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계획 변동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ISP 결과('22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5년간('23~'27) 총 사업비용: 253.3억원

○ 시스템 구축 기간('23~'25) : 192.8억원

- 1차년도('23): 47.9억원 (시스템 개발비 43.1억원)
- 2차년도('24): 92.5억원 (시스템 개발비 67.3억원)
- 3차년도('25): 52.4억원 (시스템 개발비 11.7억원)

○ 2026년 이후, HW(클라우드)·SW 유지비용(구입·구독) 및 시스템운영비 발생: 연 30.1억원

* 시스템 운영비용은 시스템 구축(개발) 누적비용의 약 12%로 산정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 총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계
①거래 시스템 개발	온라인거래소(B2B)*	1,466	1,914	354	-	-	3,735
	온라인거래소(B2b)**	883	1,318	235	-	-	2,436
	운영자 시스템	1,257	293	158	-	-	1,708
	물류정보연동시스템	137	543	68	-	-	748
	정산시스템	567	547	141	-	-	1,255
②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	1,558	158	-	-	1,715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	565	57	-	-	622
시스템 개발(구축)비 합계(①②)		4,310	6,737	1,172	-	-	12,219
③인프라(HW)도입 (클라우드 서버)	온라인거래 서버	51	303	702	702	702	2,458
	빅데이터 서버	-	455	799	799	799	2,853
④SW 구매		93	775	1,012	50	50	1,979
⑤감리비(VAT포함)		344	468	236	-	-	1,049
부대 비용 합계(③④⑤)		487	2,001	2,749	1,551	1,551	8,340
⑥시스템 운영(외주) * 시스템 개발 누적금액의 12%		-	517	1,326	1,466	1,466	4,776
시스템 구축·운영비 총계(①②③④⑤⑥)		4,798	9,256	5,247	3,017	3,017	25,334

* (B2B) 산지와 도매유통인(중도매인 및 직접구매자 등) 간 거래하는 플랫폼

** (B2b) 도매유통인(중도매인 및 직접구매자 등)이 B2B 거래플랫폼에서 확보한 농산물과 오프라인 거래를 통해 확보한 농산물을 소매유통인에게 판매하는 플랫폼

❑ 예산 반영 현황

○ 세부사업: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내역사업: ▭ 플랫폼구축, ▭ 운영지원)

- '23년 예산 4,862백만원(플랫폼 구축 4,622, 운영지원 240)

- ’24년 예산 10,434백만원(플랫폼 구축 9,256, 운영지원 1,178)